

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2017.08.01.

8차 개정 2025.11.03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5조에서 정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9.11.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원격수업” 이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%이상이 원격(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)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, 원격수업에는 온라인수업, 원격강의, 가상강의, 전자강의 등의 용어를 포함한다. 다만, 대면 수업의 보조 수단(수업자료 탑재, 질의·응답, 토론 등)으로서 원격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3.1.16.>

2. “원격수업병행” 이란 학칙 제25조제3항에서 정한 출석학습과 제1호의 원격수업이 전체 수업의 70%이하로 병행하여 운영하는 수업을 말한다. <개정 2023.9.11.>

제2조의2(주관부서) ① 교무처는 원격수업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학사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. <신설 2023.1.16.>

②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원격수업 개발, 운영, 평가 및 질 관리 지원,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 <신설 2023.1.16.>

제2조의3(원격수업관리위원회)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·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(이하 위원회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격교육지원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은 교무처장, 교무팀장, 전임교원과 학생,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, 학생 인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원격수업 계획 및 기획에 대한 심의
- 원격수업 강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심의
- 그 밖에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

[본조신설 2025.11.3.]

제3조(학점인정) 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졸업학점 총 수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3.1.16.>

② 학칙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에 따라 국내·외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(학점교류 포함),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졸업학점 총 수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1.4.5., 2023.1.16.>

③ 삭제 <2021.4.5.>

④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원격수업 수강 학점은 전체 수강 학점의 30%를 초과할 수 없다. <신설 2025.11.3.>

제4조(학점당 이수시간) 원격수업의 학점 당 이수시간은 학칙 제24조에 따라 15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 <개정 2023.1.16.>

제5조(수업일수 및 수업시간) ①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은 교무규정 제23조에 따른다. 다만, 과목의 특성에 따라 블록형태(주 또는 일 단위)의 수업으로 그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(수업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학칙에서 정한 학점당 15시간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)

② 1차시의 수업 콘텐츠 진행시간은 최소 25분(1학점 기준)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. 단,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토론 수업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5분 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다.

③ 1차시 총 학습시간은 50분 이상이어야 하며, 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를 포함한다. <개정 2020.8.24.>

④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시간에 대한 교원의 시수인정 및 강사료 산정은 본 대학의 강사료지급규정을 따른다. <개정 2024.2.26.>

⑤ 위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강좌의 수업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시수 전체를 인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0.8.24.>, <개정 2021.4.5.>

제6조(출석관리) ① 원격수업의 출석인정 기준(접속시간 등을 포함한다) 및 결석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의실 수업에 준하여 본 대학 학칙으로 정한바에 따른다.

② 공정한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학사운영플랫폼, 학습관리시스템(Learning Management System) 또는 기타 원격수업용 서비스(클라우드서비스를 포함한다) 등을 활용하여 운영한다. <개정 2020.8.24>

③ 재해, 재난 및 감염병 유행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학기의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0.8.24.>

제7조(평가관리) ① 학생의 성적평가(중간고사, 기말고사 등)는 출석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원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소한다.

② 원격평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 시작시간, 종료시간, IP주소 등의 평가근거자료를 담당교수가 평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.1., 2022.2.28.>

제7조의2(강의평가) ① 원격수업 강의평가에 대한 사항은 본 대학 강의평가지침에 따른다. <신설 2023.9.11.>, <개정 2024.2.26>

② <신설 2023.9.11.>, <삭제 2024.2.26>

제8조(수강인원) ① 삭제 <2021.4.5.>, <신설 2023.1.16.>, 삭제 <2025.11.3.>

② 필요한 경우 강좌별로 수강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. <신설 2023.1.16.>

제8조의2(외부 콘텐츠 사용 및 인정기준) 외부콘텐츠 사용은 「저작권법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다. <신설 2023.1.16.>

- 제8조의3(콘텐츠의 질 관리) ① 강의콘텐츠 사용기간은 제작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
- ② 제작일부터 3년이 지난 콘텐츠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간접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결과에 따라 유지, 수정 및 보완, 폐기 및 재제작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③ 교원이 강의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.
- ④ 원격수업의 질 관리 및 원활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위해 시설, 기자재, 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5.11.3.]

제9조(운영의 제한) ① 원격수업의 과목 운영 및 학점취득 등은 본 대학 학습관리시스템(LMS)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국내타대학등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 대학에서 진행하는 수업(원격수업 포함),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을 이수한 과정도 본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<개정 2018.1.1., 2025.11.3.>

② 원격수업 과목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(부) 등에서는 교무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원격수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③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해, 재난 및 감염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기 개시 후 또는 수업 운영 중 총장의 승인을 받아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20.8.24.>

제10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의 특례) 이 규정 제5조, 제6조 및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하되,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.